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인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 구체화〉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705호)

2024.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목 차

I . 제출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 개정안 내용의 관련 조문	6

I. 제출경위

1. 제 출 자 : 정부
2. 제 출 일 : 2024. 7. 12.
3. 회 부 일 : 2024. 7.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군인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군인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정당 및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33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군인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제33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정치 단체”라 한다)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1.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2. 「정당법」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 3.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 5.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그 선거의 당선인·후보자·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현행	개정안
② 군인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생략)	②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다른 사람</u>---- <u>정치단체</u>----- ----- ----- ----- 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군인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¹⁾한 바 있음.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군인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정당 및

1) 헌법재판소 2020.4.23. 선고, 2018헌마551: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됨.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기준을 도출할 수 없음(명확성의 원칙 위배)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구체화함으로써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침해 최소화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조치는 타당해 보임.

□ 다만 부단히 변화하는 정치환경을 고려할 때 동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환경단체, 봉사단체 등 활동 범위에 따라 정치적 성격을 지닐 가능성이 있는 단체들을 규율할 수 없다는 입장과, 군인이 직무와 관련되지 않거나 혹은 지위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정치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 이와 같이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계된 다양한 입장 차이를 감안할 때, 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정부에서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의안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0호)²⁾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0호)

제6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를 “정치단체”로 한다.

-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정치단체”라 한다)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1.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2. 「정당법」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
 3.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
 5.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그 선거의 당선인·후보자·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법률안」(의안번호 제1709호)³⁾에 대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9호)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정당”을 “특정 정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를 “정치단체”로 한다.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정치단체”라 한다)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1.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2. 「정당법」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
3.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
5.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그 선거의 당선인·후보자·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참고자료

□ 개정안 내용의 관련 조문

- 개정안 제1항 제1호의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당헌, 당규에 따른 정당 조직

「정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28조(강령 등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①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정당의 명칭
2.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 개정안 제1항 제2호의 「정당법」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

「정당법」

제5조(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 개정안 제1항 제3호의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정당법」

제3조(정의) 7. "후원회"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8조(후원회의 회원) ①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안 제1항 제4호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

「정당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중략)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①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310